

파랑새축구회 회칙개정 대조표

(2025.02월 개정 예정)

규정	개정전	개정후	비고
총칙	총무	사무차장(재무)	직책 변경
제 2 장 회 원	①정회원 : 준회원으로서 월례회의에서 입회승인을 받고 가입비 납부와 함께 정회원으로 인정한다(배번부여),	①정회원 : 준회원으로서 월례회의에서 입회승인을 받고 <u>유니폼비</u> 납부와 함께 정회원으로 인정한다(배번부여),	가입비 납부 면제 유니폼비 대체
제 3 장 조 직 10조(임원진)	③ [임원진] 임원으로는 회장과 사무를 총괄할 총무(사무장) 1인을 두며, 적정 수의 고문 및 부회장, 부총무, 감독, 코치, 등으로 구성 한다. (사무장 1인 총무1인 부총무1인 인터넷 관리자 구성한다) (사무장.총무는 회비 면제)	③ [임원진] 임원으로는 회장과 사무를 총괄할 <u>사무장 1인을 두며</u> , 적정 수의 고문 및 부회장, <u>사무차장, 부총무, 감독, 코치, 등으로 구성 한다.</u> <u>(사무장 1인 사무차장 2인, 적정수의 부총무)</u> <u>(사무장.감독 회비 면제/ 그 이하 임원은 연간 회비 연납 기준 30만원 중 10만원을 면제 한다,단,임기 중 임원 사퇴 시 잔여 임기 감안하여 면제 받은 금액의 차액을 회비 납부 한다.)</u>	임원진 직책 변경 및 회비 면제 조항 변경
제 5 장 운동 모임 28조	제28조 [신체관리] 본회의 운동경기 중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자신이 책임진다. 단, 입원 등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본회에서 적정선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신체관리] 본회의 운동경기 중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자신이 책임진다. 단,위로금 지급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제28조 [신체관리] 본회의 운동경기 중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자신이 책임진다. 단, <u>위로금 지급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u>	위로금 지급 기준 및 금액 제정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기한</th><th>지급 기준</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입원</td><td>2주 이상</td><td>위로금 ₩200,000원</td><td></td></tr> <tr> <td>4주이상</td><td>위로금 ₩200,000원 외 회원 모금</td><td></td></tr> <tr> <td rowspan="3">치료기간</td><td>4주~6주</td><td>위로금 ₩100,000원</td><td rowspan="3">진단서 기준</td></tr> <tr> <td>7주~10주</td><td>위로금 ₩200,000원</td></tr> <tr> <td>10주 초과</td><td>위로금 ₩200,000원 외 회원 모금</td></tr> </tbody> </table>		구분	기한	지급 기준	비고	입원	2주 이상	위로금 ₩200,000원		4주이상	위로금 ₩200,000원 외 회원 모금		치료기간	4주~6주	위로금 ₩100,000원	진단서 기준	7주~10주	위로금 ₩200,000원	10주 초과	위로금 ₩200,000원 외 회원 모금	
구분	기한	지급 기준	비고																			
입원	2주 이상	위로금 ₩200,000원																				
	4주이상	위로금 ₩200,000원 외 회원 모금																				
치료기간	4주~6주	위로금 ₩100,000원	진단서 기준																			
	7주~10주	위로금 ₩200,000원																				
	10주 초과	위로금 ₩200,000원 외 회원 모금																				
제 6장 회계 33조 (회비 및 가입비)	제33조 [회비 및 가입비] ① 정회원은 정해진 회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30,000원/월 , 연간 선납 시 300,000원/연)	제33조 [회비 및 가입비] ① 정회원은 정해진 회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30,000원/월 , 연간 선납 시 300,000원/연) 연간 선납 회비는 매년 2월 말일까지를 기한으로 한다	연간 선납 회비 납입 기한 제정																			
제 7 장 기 타 39조 (인터넷 운영)	제39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축구회가 될 수 있도록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 한다. <u>다.</u> - 이하 사항		회칙 삭제																			

안성시 파랑새축구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파랑새축구회」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 파랑새축구회는 개인의 건강증진과 회원 간의 친목도모 및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 주소지는 안성시 관내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가입자격] 대한민국에거주하는 자는 남 녀, 지역, 국적을 불문하고 본회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

① 회원가입 절차: 본회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이수하고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 사진)를 제출한다.

②4조 1항을 완료하고 차기 월례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제5조 [회원의 분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①정회원 : 준회원으로서 월례회의에서 입회승인을 받고 가입비 납부와 함께 정회원으로 인정한다(배번부여),

①정회원 : 준회원으로서 월례회의에서 입회승인을 받고 유니폼비 납부와 함께 정회원으로 인정한다(배번부여),

②준회원 : 적응기간 중에 있는 자와 20세 미만의 학생, 기타 사정으로 정회원 승인을 받지 못한 자에 한 한다. (정회원으로써 군복무 및 장기 거주지 이전으로 타 지역 근무자 등) (적응기간은 최소 2주 최대 4주 동안으로 한다.)

③명예회원 : 정식회원은 아니나, 본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 인사로서,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이 있을 경우 명예회원으로 위촉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권리] 정회원: 총회 및 기타 회의에서의 의결권을 가지며, 운영진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기타 포상권 등 일체의 권리를 누린다.

준회원: 회비부담 및 배번은 부여하지 않으며 운동 이외에는 대부분의 권리행사를 제약하고 대외 정규경기에 참여 할 수 없다.(출석, 득점 등은 기록관리)

명예회원: 대외 정규경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회원으로서의 의무는 지지만 권리는 누리지 못한다.

②[의무] 모든 회원은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모임에의 적극적인 참석과 정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각 회원은 본회의 유지, 발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 [회원 관리]

- ① 정회원이 다른 축구회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안성시 축구협회/연합회 규정에 준하여 대외 정규 경기에는 참여 할 수 없다.
- ② 회원은 신상에 변동이 있을 시 즉각 총무에게 알려야 하고, 회원의 명단 및 연락처 등은 총무 변동이 있을 시 월례회를 통해 배포한다.

제8조 [자격상실] 자격상실 전까지 평생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회원의 자격상실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본인의 자유의사로 탈회를 요청한 경우
- ② 본 회의 목적과 발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 ③ 6개월 동안 연락도 없고 출석 및 회비 납부 없을시 상반기,하반기 총회때 이유 불문하고 제명처리 한다

상기 ②③의 경우 임원회의에서 본인 의사 최종 확인 후 월례회의 승인을 거친다.

제9조 [탈퇴 등] 본 회의 탈퇴할 시에 이미 입금된 회비는 돌려받을 수 없다. 탈퇴 후 재가입은 본회 규칙에서 정한 가입절차에 따르며, 제명으로 탈퇴된 경우에는 임원회의에서 심의 후 그 방법과 절차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 3 장 조 직

제10조 [임원] ① 본 회 운영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소한의 임원을 둔다.

* 본 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 조직하여 운영한다*

② 임원은 본 회 사무를 의결, 집행하고 이를 추진할 의무와,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임원진] 임원으로는 회장과 사무를 총괄할 총무(사무장) 1인을 두며, 적정 수의 고문 및 부회장, 부총무, 감독, 코치, 등으로 구성 한다.

(사무장 1인 총무1인 부총무1인 인터넷 관리자 구성한다)

(사무장.총무는 회비 면제)

③ [임원진] 임원으로는 회장과 사무를 총괄할 사무장 1인을 두며, 적정 수의 고문 및 부회장, 사무차장, 부총무, 감독, 코치, 등으로 구성 한다.

(사무장 1인 사무차장 2인, 적정수의 부총무)

(사무장.감독 회비 면제/ 그 이하 임원은 연간 회비 연납 기준 30만원 중 10만원을 면제 한다,단,임기 중 임원 사퇴 시 잔여 임기 감안하여 면제 받은 금액의 차액을 회비 납부 한다.)

제11조 [회장단]

①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회장자격요건] 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만 25세 이상으로서 회원으로서 입회

후 만 1년 동안 회원의 의무를 다 한 자로 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타 임원진도 입회 후 만 1년 동안 회원의 의무를 다 한 자로 한다.

③[권한과 의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진다. 회장은 총회, 임원회의, 월례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부회장] 부회장은 각 연령대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선출하되 부득이한 경우 회장이 선임한다.

40대 30대, 20대 부회장은 각 연령대를 대표하며 회장 유고시 연령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또한 40대, 30대, 20대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 한다.

부회장 선출은 수석부회장, 부회장 선출한다

제12조[회장선거절차] 타 선출직 임원선거에도 준용한다.

①회장선거 공고 : 회장 선거일 1개월 이전

②출마원서 교부 및 접수 : 공고 후 10일까지

③선거운동 : 후보자 접수 후 총회 전날까지

④선거(총회)

1)후보 1인 시 찬반투표 : 정회원의 50%이상 참석과 참석회원의 50% 이상 찬성으로 선출, 과반 득표 미달 시 재투표

2)후보 2인 이상 시 자유선거 : 무기명 비밀투표, 과반수표 획득자 승리(결선투표제 시 다수표로 결정)

3)후보가 없을 시 : 선거 재공고 하며 회장선거 절차를 재 진행한다.

제13조 [사무장단] ①[사무장선출] 사무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단 선거의 편의를 위해 회장선거 시 회장후보는 미리 사무장을 지명해 입후보 할 수 있다.

②[사무장의 권한과 의무] 사무장은 회장의 지휘 아래 본 회의 운영전반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며 중요한 사안은 월례회에 보고토록 한다.

③[사무장] 회장이 사무장과 협의하여 적절한 사무차장을 지명한다. 사무차장은 회장과 사무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한다.

제14조 [임원회의] ①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할 경우 소집한다.

②임원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논의한다.

1)정기회, 임시회, 월례회 등 준비

2)정기적, 우발적인 중요 활동, 사업 결정

3)예산, 결산 등 회계문제

4)회원 자격심사 및 징계, 제명 논의

5)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및 기타 중요사항 발생 시 대처

6)기타 사안

제15조[코칭스태프] ① 회장은 감독, 코치 등 필요인원을 임명해야 한다.

② 코칭스태프의 임기 및 기타사항은 임원진에 준한다.

③ 감독은 선수관리와 훈련 및 시합을 관장하며 경기 및 훈련, 선수선발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 감독은 축구 기술 발전을 위한 조언, 교육, 기술 및 전술개발에 힘써야 하며, 시합의 운영과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의 지시에 의해 훈련 및 게임 운영을 보조한다.

⑤ 감독은 파랑새 축구의 발전을 위하여 기술위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회장의 임기는 1월1일에 개시하여 임기종료 년 12월31일에 종료한다.

단,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그 시점까지 임무를 수행한다.

③ 회장을 제외한 임원진 유고시 회장은 즉시 후임자를 임명한다. 회장 유고시 그 권한은 40대-30대-20대부회장 순으로 대행한다. 단 6개월 이상의 임기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회장을 새로이 선출한다.

④ 회장 임기를 기준으로 기를 구분하며, 모든 임원은 회장과 임기를 같이 한다.

⑤ 보궐선거로 선출된 회장은 잔여임기동안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17조[해임과 탄핵]

① [탄핵발의] 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진의 활동이 본 회의 목적과 발전에 중대히 위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②[탄핵절차] 탄핵발의가 확정된 경우 회장(회장이 탄핵대상일 경우 부회장)은 즉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탄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탄핵결정] 탄핵의 결정은 정회원2/3 이상 참석에 참석회원 2/3 이상의 의결로 확정한다. 탄핵이 확정된 임원은 그 즉시 직위를 상실한다. 탄핵결정으로 유고가 된 직책은 즉시 후임자 선출 절차를 진행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회장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재신임을 물을 경우에도 본 17조 3항을 적용하되 정회원의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회 의

제18조[회의] ① 본 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정기(총)회의이며, 필요시 임시(총)회의를 둔다.

② 본 회의 원활한 운영과 편의를 위하여 매월 월례회를 개최한다.

제19조 [정기회] ① 정기회는 매년 1회 회장 또는 임원회의의 의결로 소집하며, 집회일은 12월 중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한다.

1) 1년 총결산 및 회계보고 4) 차년도 활동계획(사업계획)

2) 우수회원 포상 5) 회칙개정

3) 임원의 선출 6) 기타 중요사항 심의, 의결

제20조 [임사회] ① 임사회는 필요시 회장, 임원회의 또는 회원 1/3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개최일정 등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② 임사회의 안건은 발의자가 부의하는 안건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한 한다.

제21조 [임원회의] 회장은 정기적, 우발적인 중요 활동, 사업의 결정을 위하여 임원회를 수시로 소집해야 한다.

제22조 [월례회] ① 회장은 매월1회 월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임원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월례회와 겸하여 할 수 있다.

제23조 [성립요건] 모든 회의는 정회원(또는 위원)의 과반 수 이상 참석으로 성립한다.

제24조 [의결요건] 정기회의, 임사회의, 월례회의 막론하고 모든 의결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체 참석회원 (또는 위원)의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운동 모임

제25조 [운동모임 이하 모임이라 칭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1회 이상 모임을 가져야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26조 [참여규정] ① 모든 회원은 반드시 모임에 참여해야 할 의무를 진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불참 시 일정한 제재 혹은 징계를 과할 수 있다.

제27조[훈련규정] ① 매주 1회 이상 정식훈련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코칭스태프의 구성 및 훈련일정, 시합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감독의 결정에 따른다.

③ 훈련과 작전, 선수선발, 선수교체 등에 관한 한 코칭스태프의 결정에 따른다.

제28조 [신체관리] 본회의 운동경기 중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자신이 책임진다. 단,위로금 지급기준은 아래표와 같이 한다.

<별첨> 위로금 및 모금 지급 기준

구분	기한	지급 기준	비고
입원	2주 이상	위로금 ₩200,000원	
	4주이상	위로금 ₩200,000원 외 회원 모금	
치료기간	4주~6주	위로금 ₩100,000원	진단서 기준
	7주~10주	위로금 ₩200,000원	
	10주 초과	위로금 ₩200,000원 외 회원 모금	

제29조 [시합과 포상 등]

① 정규시합 시 수비, 공격을 선정하여 MIP(Most Impressive Player : 가장 열심히 뛰는 선수)를 선정, 기록하여 점수로 관리한다. MIP의 선정은 코칭스태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② 주전의 선정은 출석률과 실력을 우선 고려한다.

※주전의 선정은 1.회비 시합전달까지 완납한 회원,2.출석 3개월전달 정시운동 정시 출석우선,3.실력을 고려한다.※회비납부회원에서 선발※

③ 월례회 시 출석률, MIP를 고려해 월간 MVP를 선정, 시상한다.

④ 정기총회 개최 시 출석, 월MVP, MIP, 공로 등을 종합해 연간 MVP를 선정한다. 월간, 연간 MVP에게는 일정한 상금 혹은 상품을 수여한다

※출석.공로,총점 우선으로 연간 MVP선정 상금.상품수여※

⑤ 개인상 정리 : 출석상, 득점왕, A/S왕, 수비상, 기량발전상, 신인상, 공로상, 월 MVP, 년MVP

※개인상 정리 : 상장 및 소장에 선물지급※

MVP 기준

회원 점수제 : 회비정상납부-5점/월 정시출석-4점/회 지각-2점/회 결석신고-1점

MIP-3점 주/부심-3점 회원섭외-3점/인당 찬조-3점/회당

봉사-3점/회당 입장식 정시참석자-10점 시합출전 및 응원회원-5점

※ 주/부심 점수3점 전/후 한번만 했을시 점수 없음. 입장식 정시 10점 시합전 출석 출전 선수 점수 없음,응원회원 5점※

골/어시스트-1점/각

月MVP제도(회원 점수제에 입각) : 상장, 5만원 상품권 지급, 홈페이지 표지모델

年MVP제도(회원 점수제에 입각) : 상패, 상품권, 명예의전당

개인상 : 출석상, 득점왕, 어시스트왕, 수비상, 공로상, MVP,최우수상,우수상 신인상, 베스트11,

※출석상,공로상,,MVP,신인상 현행대로 시행※

※득점상,어시스트,수비상,최우수선수,우수상.베스트11 폐지 일부 상장 및 상품전달※

회비 연체자 불이익 조치 : 각종 권리 제한, MVP후보 자격 박탈, 3개월 연체 시 제명 등
개인적 물의 시(음주 소란 등) : 월례회 공개 사과, 4주간 봉사활동(경기투입 보류/개인 훈련만 가능)

※개인적 물의시 : 공개사과,벌금 및 봉사 활동 1.3만원벌금 조끼세탁4번 2.5만원봉사없음 단, 결석신고는 인터넷 및 전화(총무단)도 인정

회비 납부는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입금 분까지 계산한다.

제 6 장 회 계

제30조 [재원] 본 회의 자금운영은 회비와 가입비 기타 찬조금, 지원금, 상금, 벌금 등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1조 [회계집행] 회계는 회장의 책임 하에 사무장이 관장한다. 임원회의는 이에 관하여 사전, 사후에 조연과 감사를 할 수 있다.

제32조 [회계의 기록, 보고]

- ① 사무차장(재무) 자금의 수입, 지출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 ② 회장은 매월 자금입출 내역을 홈페이지 및 월례회에 공지하여야 한다.
- ③ 자금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본 회 명칭의 통장을 개설하고, 회비는 모두 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 ④ 장부 및 통장은 회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제33조 [회비 및 가입비] ① 정회원은 정해진 회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30,000원/월 , 연간 선납 시 300,000원/연)

연간 선납 회비는 매년 2월 말 일까지를 기한으로 한다

- ② 회원의 신변에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회비를 모금 할 수 있다.
- ③ 정회원이 되려는 자는 일정액의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입비를 납부한 달의 회비는 면제한다.
- ④[지출] 회비의 지출은 본 회의 운영과 친목도모에 사용하되 사용처는 이하의 경우로 한정한다.

- 1) 본 회 운영비, 회의경비 및 행사비용
- 2) 유니폼 및 장비구입
- 3) 우수회원에게 대한 포상과 회원관리 및 품위유지
- 4) 기타 임원회에서 인정하는 잡비

제34조 [회비체납] 6개월 이상 회비(벌금포함)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명한다.

제35조 [경조사 등] ① 회원의 경조사에는 회원 모두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부의금은 회원개인별로 한다. 단 입회1년 후 회원의무를 다한 회원 중 정회원 본인 및 직계존속 기준 2회로 한다.

- ② 기타의 경조사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36조 [결산]

- ① 결산은 매년 정기회에서 사무차장(재무) 회비의 출납상황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한다.
- ② 결산 내용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해명을 요구할 수 있고 총무는 반드시 해명하여야 한다.

제37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1년 단위로 한다. 회계연도의 개시는 매년 1월 1일로 한다.

제 7 장 기 타

제38조 [회칙개정] 회칙의 개정은 임원회의 및 회원 1/3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 의결로 확정한다.

단, 회칙개정이 발의되면 회장은 즉시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개진 한 후 총회 일자를 공고 후 개정 절차를 밟는다.

제39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축구회가 될 수 있도록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 한다.

① 공지사항, 선거운동 등은 가능한 한 홈페이지 이용을 우선으로 한다.

② 홈페이지의 모든 사항은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③ 파랑새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www.bluebird98.net> (혹은 검색창에 "파랑새축구회" 입력) -삭제

제40조 [물품의 관리]

① 본 회 운영에 필요한 물품은 수시 구입할 수 있으며 사무실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물품은 각 회원이 필요할 경우 무료로 대여할 수 있고 사용 완료 후에는 깨끗이 정리 후 반납하여야 한다.

③ 대여 사용하는 회원은 물품이 분실되거나 파손 시 배상 또는 복구 하여야 한다.

제41조 [친목도모] 회장은 회원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여야 한다.

① 체육대회, 단체여행, 단합대회 등 친목도모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42조 [포상, 벌금, 기타] ① 모범적이고 우수한 활동을 한 회원에 대해서는 소정의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본 회의 규정을 이유 없이 위반하거나, 본회에 해가 되는 행동, 불량한 태도를 보인 회원에게는 징계, 제명 등의 벌칙을 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임원회의를 소집해 적절한 벌칙을 결정한다. 피징계자에게는 임원회의에 참석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부칙

제1조 본 회의 창립일은 1998년 09월 24일로 한다.

제2조 본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1998년 09월 24일)

제3조 본 회칙의 개정 시 개정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단, 경과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과규정을 따로 둘 수 있다.

제4조 회칙의 개정이 확정된 순간 구 회칙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5조 본 회칙에 의한 최초의 회장선거는 1998년 09월 30일 이전으로 한다.

제6조 본 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본 회칙과 세칙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관습에 의하고 이견이 있을 때는 월례회의, 임원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제정 1998년 9월 24일 (창립총회)

제1차 개정 1999년 1월 4일 (제1차 정기총회)

제2차 개정 1999년 6월 20일 (임시총회)

제3차 개정 1999년 12월 19일 (제2차 정기총회)

제4차 개정 2000년 12월 17일 (제3차 정기총회)
제5차 개정 2001년 12월 16일 (제4차 정기총회)
제6차 개정 2002년 12월 15일 (제5차 정기총회)
제7차 개정 2003년 12월 21일 (제6차 정기총회)
제8차 개정 2005년 12월 18일 (제8차 정기총회)
제9차 개정 2010년 07월 08일 (2010년 제2차 임시총회)
제10차 개정 2016년 12월 07일 (2016년 임시총회)
제11차 개정 2018년 12월 16일(2018년 정기총회)
제12차 개정 2022년 12월 11일 (2022년 정기총회)
제13차 개정 2023년 12월 (2023년 정기총회)
제14차 개정 2025년 01월 (2024년 시무식 임시총회)